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인터넷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